

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3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 변경

(기존)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

(변경)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
나.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(안 제2조, 제3조)

다.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(안 제9조)

라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준용 조항 추가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에 8백만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11.24.~2022.12.13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
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지원사업 등)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
2.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 및 연구사업
4.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실태조사 등)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처우개선위원회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

③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에 따른 평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0조(신분보장)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포상)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1. 12. 21.]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
- 제4조의5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4조의6(지역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위원회”는 “지역위원회”로,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은 “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

② 제4조의5,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「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안 제7조(지원사업 등)에 따른 지원

-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 : 8백만원(매년 1회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
연락처	(033) 330 - 2150